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행정기본법」을 기준으로 이의신청 특례 정비〉

■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33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이의신청 관련 규정 정비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정훈 의원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20.
3. 회부연월일 : 2024. 9.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교육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Ⅲ. 검토의견

1. 이의신청 관련 규정 정비(안 제21조)

개정안은 「학술진흥법」에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행정작용에 관한 기본법인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을 고려하여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u>제21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u>	<u>제21조(이의신청 특례)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결과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u>

현행 「학술진흥법」에 따르면, 동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¹⁾.

한편, 개별법마다 다르게 규정된 유사 제도의 공통사항을 체계화하여 행정의 신뢰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에 제정·시행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며, 행정에 관하여 일반법적 성격을 가짐²⁾.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14일 이내(10일 범위 1회 연장 가능) 그 결과를 통지하여여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 이상의 이의신청은 처분에 이의있는 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취지로서, 2012년부터 「학술진흥법」에 규정되었음. [시행 2012. 1. 22.] [법률 제10877호, 2011. 7. 21., 전부개정]

2) 「행정기본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 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 5.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기간(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심판·소송 제기 등 이의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행정작용에 대한 일반법인 「행정기본법」이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기간에 대하여만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에서 원칙적으로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시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개정안
원칙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결과 통지(제36조제2항 본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하고 결과 통지
예외	14일 이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u>10일의 범위에서</u> <u>한 차례 연장</u> 할 수 있음 (제36조제2항 단서)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결과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 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

이는 동 법에 따른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문제되는데, 이의신청
일부터 결과통지 기간이 길어질 경우 권리구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나,

이의신청 접수 시 검토 등을 함에 시간이 소요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제재처분 재검토시 30일 이내 결정하도록 하는 점 등을 고려
할 때³⁾, 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

다만, 예외규정으로써 추가적 연장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
므로,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10일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가능)하는 것이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
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
자 권익보호·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
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명확하다고 생각됨⁴⁾.

교육부 및 법무부는 예외적 연장규정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⁵⁾.

문 의 처
02)6788-5185

- 4) 특례규정을 두는 취지는 원칙상 결과통지를 “30일 이내”로 하려는 것이고, 예외적인 경우 10일 추가 연장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개 정 안	수정의견
제21조(이의신청 특례)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결과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21조(이의신청 특례)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5) 구체적으로 개정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36조제2항 단서는 14일 이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정안에서 정한 30일 이내라는 특례규정과 기간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